■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[별지 제163호서식]

○ ○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

제 호 . . .

수 신: 귀하

제 목: 수사결과 통지서(피의자·송치 등)

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접 수 일 시		사 건 번 호	
죄 명			
결 정 일			
결 정 종 류	1. 송 치 () : 송치관서명 (☎ : 전화번호) 2. 이 송 () : 이송관서명 (☎ : 전화번호) 3. 수사중지 (참고인중지) ()		
주 요 내 용			
담 당 팀 장		☎	

※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안내

□ 수사에 대한 이의제기 등

◦ **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**: 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」 제54조

- 수사중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,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◦ **시정조치요구**: 공소청 민원 대표전화번호(국번없이 1301), 「형사소송법」 제197조의3

- 수사관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,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◦ **수사 심의신청**: 민원콜센터(국번없이 000)

-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심의담당관실(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인권양성평등담당관실)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다만, 입건 전 조사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증거 등의 허위·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심의신청이 가능합니다.

□ 그 밖의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

◦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: 국민신문고(www.epeople.go.kr), 정부민원안내콜센터(국번없이 110)

◦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: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(www.humanrights.go.kr), 인권상담전화(국번없이 1331)

○○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

210㎜ × 297㎜(백상지 80g/㎡)